

의안번호	제 587호
의결 연월일	2017년 4월 일 (제355회)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자	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4월 11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11일

발 의 자 : 임병운·황규철·이의영·김인수·
엄재창·임희무·박한범 의원

의안 번호	587
----------	-----

1. 제안 이유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임무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식물방제관의 권한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 시·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 규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농업기술원과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2017.2.8.~2017.2.17.(1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를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 ① 도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8명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에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가 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하고, 계약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식물방역법

-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 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전문인력 관련, 제9조 전문교육 실시, 제10조 시·군 지원시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8조~안 제10조 참고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국비, 시군비)

②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도비, 시군비)

③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 및 전문교육(도비, 시군비)

나. 추계의 전제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지원

다. 추 계 결 과 : '17년 ~ 21년까지 총 8,780 백만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2018년 기준

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 총 748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②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 : 총 72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③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 및 전문교육 : 총 36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출	8,780	1,468	1,828	1,828	1,828	1,828
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3,740	748	748	748	748	748
②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	3,600	720	720	720	720	720
③ 예찰방제단 운영지원 및 전문교육	1,440	-	360	360	360	360

6. 작성자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기술보급과장 임헌배(☎ 220-5740)